

**재난대응 가상 토론기반 훈련****목 차**

■ 건설관련 소식 1	■ 지식정보 12
- 라스베가스의 관광도시 노하우, 진해 응동으로	- 국토부!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축개선과제 신속히 추진나서
- 홍준표 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만나 지역현안 논의	- '14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평균 1.1% 상승
- 경남도, 안전 최우선..... 재난컨트롤타워 구축, 운영	- 9.1대책 후속조치(3)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 경남도, 도민 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 속도 낸다	- 「개발제한구역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경남 창원시·고성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 재건축사업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 폐지
- 집중호우 피해 중앙합동조사단 조사 실시	- “맞춤형 행복주택 건설기준” 본격 시행
- 경남도, 가을축제 안전사고 '제로화' 총력	- 교통사고 없는 꿈의 고속도로 “한국이 선도”
- 경남도, 올해 추계 도로정비 실시	-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 집중호우 피해주민 심리상담 돕는다.	■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23
- 큰 홍수에도 걱정없다. 안전한 하천 만들기 지속 추진	■ 신기술 정보 30
-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변경계획 확정	■ 건설기술심의 현황 36
- 경남도, 부실 주택건설사업자 퇴출시킨다.	■ 계약심사 현황 36
- 경남도, 2015년 국고예산 3조 7,873억 원으로 사상최대 확보	■ 기술인 나눔 정보 37

라스베가스의 관광도시 노하우, 진해 웅동으로

▶ 美 라스베가스市 스타브로스 앤서니 부시장
경남 방문



경남도가 창원시 진해구 웅동에 추진 중인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미국 유명 관광도시 라스베가스의 부시장인 스타브로스 앤서니(Stavros Anthony) 부시장이 경남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앤서니 부시장은 경제개발국장인 패트릭 시너트(Patrick Sinnott)와 동행하여 9월 14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지 방문, 도지사 면담, 사업 관계자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9월 17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라스베가스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카지노 유치 시 대형 카지노 기업과의 관계 모색 등 우호 증진과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당초 캐롤린 굿맨(Carolyn Goodman) 라스베가스 시장이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관계로 부시장이 방문하게 되었다.

앤서니 부시장 일행은 9월 15일 홍준표

도지사, 도 투자유치단 관계자와의 면담을 도지사 집무실에서 갖고 경남도와 라스베가스 시 간의 협력을 내용으로 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양 지자체 간 MOU는 복합리조트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며, 경남도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리조트 조성의 노하우를 라스베가스 시로부터 전수받게 된다.

앤서니 부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남도-라스베가스 간 관광 교류사업 발굴을 모색하고, 진해 웅동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도시개발자의 시각에서 투자가치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 날 홍준표 도지사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이므로 시장성이 충분하며, 현재 국내외 투자자들과 Blake Field와 같은 대형 개발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라스베가스 시가 지닌 복합리조트 개발의 노하우와 카지노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는 효과가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라스베가스 시는 1930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후버댐 건설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인구 5,000여 명에 지나지 않는 사막지대였으나, 현재 주변 위성도시를 포함한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이다.

한 때는 도박도시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최고급 호텔과 리조트, 국제회의 시설, 고급 골프장과 쇼핑센터 등을 다수 갖춘 관광도시로 발전했다.

경남도는 라스베가스 시 전체가 초대형 복합리조트라 불리는 만큼 앤서니 부시장 일행의

이번 방문은 진해 웅동 프로젝트의 복합리조트 구성에 선진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투자유치단 글로벌테마파크팀당
(055)211-3112

홍준표 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만나 지역 현안 논의

▶ 하동항 건설사업, 마산 가포신항 조속 개장 등 지역 현안 지원 건의



경남도는 5일 오후 2시 홍준표 도지사와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이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홍준표 도지사는 해양수산 주요 현안사업으로 하동항 건설사업, 마산항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마산 가포신항 조속 개장,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크루즈부두 건설, FTA 대응 수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FDA 해역 '위생관리전용 선박' 건조비 지원, 구명조끼 보급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경남 미래 50년 사업으로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을 위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연계한 해양플랜트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하동항 건설사업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또 마산 가포신항 문제로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기업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장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의 성공 기반인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부두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을 건의했다.

한편 이주영 장관은 경남도 방문에 이어 창원시청, 마산 가포신항, 마산 어시장을 방문하여 수산·어업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 자료 : 도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당
(055)211-3813

경남도 안전 최우선 ... 재난 컨트롤 타워 구축, 운영

▶ 도민 안전 종합대책 수립 추진 ... 도정의 최우선 가치 실현
▶ 재난 컨트롤 타워 구축 ... 재난대응 조직정비, 매뉴얼 보완

최근 세월호 사건 등 각종 재난이 잇따르자 경남도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컨트롤 타워를 정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면 개정 등을 담은 '도민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는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안전한 경남'을 최우선 도정 방침으로 정하고 그동안 도민 안전망 구축 작업을 진행해 왔었다.

그 첫 번째로 도는 8월 7일 안전업무를 안전행정국에서 분리하여 안전건설국으로 조직과 기능을 일원화하여 사회·자연 재난에 대해 초동 대응부터 복구까지 안전총괄과에서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도민 안전 종합대책'은 조직개편에 이은 후속 조치로 △안전점검 관리체계 강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재난 대응 매뉴얼 보완·확대,

△재난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개선,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도의 안전 점검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재난위험 시설물별로 중요도와 규모 등에 따라 '책임 관리제'를 도입하여 도과장 및 시·군 실국장급 등을 위험 등급별로 지정, 고위직 공무원까지 책임감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전면하여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신설하여 자체 재난복구 계획, 예방,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했으며,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 재난에 대한 피해 기준도 도와 시군이 각자 50%씩 부담하는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 기존에 풍수해, 지진 등 35개에 국한되어 있던 위기관리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보완하여 추가로 해양선박사고, 위험물 사고 등 23개 행동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58개로 대폭 늘어나게 되어 재난 유형별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밖에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차적으로 225개소의 재난 경보시스템 구축하고, 재난 안전정보 스마트폰 앱인 "안전디딤돌" 사용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며, 250억원을 투자하여 '도민안전체험관'을 2018년까지 건립하여 안전 체험교육을 통해 도민들이 직접 안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 올해 전체 예산 대비 4.8% 3,606억원 수준인 안전관련 예산을 2018년까지 6%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도민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풍수해 등 재해보험 가입률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채건 안전건설국장은 “도정의 최우선 시책을 도민의 안전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경남을 실현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055)211-4652



경남도, 도민 안전종합대책 후속 조치 속도 낸다

▶ 18일 시군 재난경보 관계자 회의 개최 재난 예·경보시설관리 체계 강화



경남도는 9월 18일 도민 안전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재난 예·경보시설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군 재난경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재난 예·경보시설 업무추진계획'을 새롭게 마련하여 경남도, 18개 시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보시설 관리요령과 그동안 재난상황에 대비한 추진상황 점검과 재난대응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경남도는 민방공 경보시설과 태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 예·경보시설의 통합 운영관리로 재난경보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도 경보통제상황실에서 시군, 읍면동에 설치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시설을 24시간 원격관리로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과 긴급 상황전파 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2015년~2017년까지 120억 원을 투입하여 경보장비가 미설치된 도내 141곳의 면사무소에 재난경보를 설치하고 도시지역에 설치된 노후 경보장비 84대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또 도는 시군, 읍면동의 기상정보를 수집·가공하는 '기상종합관측시스템'을 4억 원의 사업비로 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5억 4000만 원을 투입 자동기상관측장비 18곳을 확충하여 기상관측정보의 정밀도를 향상시킨다.

아울러 도는 시군에 설치된 각종 재난경보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여 시스템 장애예방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군은 자체적으로 21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재난경보와 방송장비를 85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시군 곳곳에 설치된 각종 시설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간·계곡에 설치된 306곳의 경보시설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자동음성통보와 기상관측시설 3,300여 곳은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책임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전 시군과 창원기상대, 군부대, 경찰청 간 재난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기상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와 비상연락체계 정비,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재난대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남도 구인모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재난 예·경보시설관리 체계 강화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경보통제담당
(055)211-4793



경남 창원시·고성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 경남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조기 복구 속도 낸다

경남도는 지난 8월 25일 남부지방을 강타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창원시, 고성군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라 복구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 전체 복구액은 834억 원이며, 창원시는 152억 원의 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396억 원이, 고성군은 79억 원의 피해에 303억 원의 복구비가 잠정 확정되었다.

두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50%를 지원받게 되며, 지방비 부담액의 50% ~ 80%의 국고 추가지원율 적용을 받아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 함안군은 우심지구로 지정되어 총 복구비 135억 원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사유시설은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비용,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용자, 상환 유예와 응급대책·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피해복구에 앞서 피해가 심한 지역의 응급 복구를 위해 복구비 10억 원과 재난 지원금 2억 원 등 12억 원을 특별교부세(국고 보조금)로 우선 확보하여 9월 1일 창원시, 양산시, 함안군, 고성군에 각각 지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국고지원 대상 피해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선포되며, 이번에 경남 창원시·고성군과 부산시 북구, 금정구, 기장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자연재해팀당 (055)211-4543



집중호우 피해 중앙합동조사단 조사 실시

▶ 9월 2일부터 6일까지(5일간) 피해지역 정밀 조사

지난 8월 25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경남지역에 유례없는 많이 비가 내렸다.

8월 25일 도내 평균 강우량은 105.8mm였으며, 시간당 강우량이 창원시 진북면이 119.0mm가 내렸고, 고성군 고성읍이 101.5mm가 내리는 등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물 폭탄을 맞았다.

이번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는 농경지 17.7ha, 주택 390동 등 6억 원이며,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11개소, 하천 88개소, 소하천 154개소 등 375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창원 229억 원, 고성 81억 원, 함안 40억 원 등 총 381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수해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추석 전에 피해지역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조기에 복구금액을 확정 지원한다.

이번 조사에 중앙합동조사단은 2개반 40명을 편성하여, 9월 2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부산·울산·경남의 수해 피해지역을 정밀 조사한다.

경남도는 9월 1일 현재 경남 도내 피해현황을 집계한 결과 창원시(229억 원), 고성군(81억 원), 함안군(40억 원)이 우심 피해지역으로 분류되어 중앙합동조사단 피해조사가 진행되며, 그 외 비우심 시·군에 대해 도 자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동시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복구계획을 9월 16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태풍 대응계획을 수립할 때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전 예방중심의 재난대비 계획을 세우고, 18개 시·군과 민·관·군 합동으로 총력 협업체제를 마련했다.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사전대비, 비상단계, 복구단계 등 단계별로 대응매뉴얼을 세분화하여 초기대응(골든타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자연재해팀당 (055)211-4543

경남도 가을축제 안전사고 ‘제로화’ 총력

- ▶ 도, 시군 지역 축제행사장 사전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경남도는 10월 중 정부 지정축제인 진주 남강유등 축제와 시군대표 축제인 남해 독일마을맥주축제 등 27개의 크고 작은 지역축제가 계획되어 있어 사전에 행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인명사고 방지에 중점을 두고 축제 행사장 안전요원 배치, 사고발생 시 조치계획, 축제 상황실 운영 등이 포함된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 전기·가스·화기시설 등의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등이다.

도와 시군은 지역축제 개최 전에 해당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하고, 경미한 안전 위협 요인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며, 현지 시정조치가 어렵고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행사 전까지 보수·보강을 마칠 계획이다.

구인모 경남도 안전총괄과장은 “축제기간 중 안전의식 결여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해서 안전사고 ‘제로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도내 각종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 스스로도 들뜬 분위기로 안전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사회재난담당
(055)211-4533

경남도, 올해 추계 도로정비 실시

- ▶ 내달 1일부터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도내 15,561개 도로 일제정비 실시
- ▶ 파손·기능저하 도로 시설물 정비, 동절기 대비 제설자재 비축·장비점검으로 도로안전사고 예방

경남도는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추계 도로정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도로(15,561노선 10,129Km)에 대해 도내 전 시군과 공동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파손과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안전에 취약한 급경사지, 비탈면, 동절기 강설 및 결빙에 대비한 제설자재의 비축상태와 장비를 점검한다.

또 일반적인 노면 평탄성 확보를 비롯하여 각종 도로시설물의 청결상태 유지, 교량 및 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 배수시설,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등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경남도 이용재 도로과장은 “이번 추계 도로정비로 경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알리고, 도민의 안전과 도로 이용자에게 최적의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10월말 경 시군에서 일제 정비한 도로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며, 미비사항은 재정비와 현장 시정조치를 하고 우수 시군 및 유공자에게는 연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055)211-4673



집중호우 피해주민 심리상담 돕는다

▶ 20일부터 재난심리지원센터 심리상담 본격 지원

경남도는 지난달 25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수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재난심리지원센터(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심리상담 활동을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시간당 119mm가 내린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충격에 빠진 피해 도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심리상담은 피해주민과 그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키고, 사회병리 현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여 온전한 삶으로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심리지원센터(센터장 박동숙)는 재난심리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받은 창원시와 고성군 중 피해가 심한 마산합포구와 고성읍, 마암·회화면 등 수해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

경남도 구인모 안전총괄과장은 “소방방재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재난이전의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자연재해2팀당 (055)211-4595



큰 홍수에도 걱정없다.. 안전한 하천 만들기 지속 추진

▶ 경남도, 하천 20곳 하천기본계획 수립하고 수해상습지 34곳 정비

경남도는 도비 20억 원을 들여 하천 20곳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홍수방어계획을 마련하고, 국·도비 934억 원을 투입하여 34곳의 수해상습지 하천을 완벽하게 정비하여 큰 홍수에도 안전한 하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천기본계획 수립 중인 하천은 양산천, 신반천, 토평천 등 20곳으로 올해 7월 용역을 착수해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며,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수립율은 78.2%에서 80.1%로 1.9% 상승하게 된다.

특히, 하천기본계획은 홍수방어계획 뿐만 아니라 보전·복원·친수지구를 지정하여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등의 보전과 하천의 생태환경 복원과 친수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또 앞으로 하천정비 시 아름답고 풍요로운 하천을 만들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진주 금곡, 고성 신용, 거제 소동 금곡 등 8곳의 지구를 올해 준공하고, 계속지구인 남해 무림, 사천 중선포, 의령 유곡 등 22곳의 지구에 대한 하천정비가 내년에 완료되면 하천 개수율은 65.7%에서 69.4%로 3.7% 증가하게 된다.

창녕, 임천, 부목, 문송 등 올해 신규지구 4곳은 현재 실시설계와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10월 착공할 예정으로 경남도는 지방하천의 홍수방어능력을 높여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기존 제방이 붕괴된 구간, 배수 구조물, 절·성토부 등 재해취약시설물을 먼저 시공하여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 자료 : 도 하천과 하천시설담당 (055)211-3933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변경계획 확정

▶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특구변경계획 심의 원안가결



경남도는 지난 25일 중소기업청 소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특구 변경계획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심의한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변경계획안은 당초 2007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던 사업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면적은 265만㎡에서 388만㎡으로 123만㎡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구별 증가되는 면적은 내산지구 22만 7,000㎡, 장좌지구 100만 4,000㎡이다.



《내산지구, 삼강엠엔티》



《장좌지구, 고성조선해양》

이번 특구계획 변경은 조선기자재 및 중 소형 선박건조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설비 생산에 필요한 전용 공간을 추가 확대 조성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부 및 점사용부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양플랜트 설비 생산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중소조선업체의 해양플랜트 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도지사는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조선해양산업특구 육성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해양플랜트 관련 사업을 경남의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도는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확대는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연내 특구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경남도 박일동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앞으로 10월초 중소기업청의 특구계획 변경안이 확정 고시되면 내년 8월까지 경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일반산업단지 변경계획을 승인받아 2018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자료 : 조선해양플랜트과 조선해양담당
(055)211-2754



경남도, 부실 주택건설사업자 퇴출시킨다

▶ 도·대한주택건설협회 합동으로 등록기준 중점 점검

경남도는 도내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건실화를 위하여 대한주택건설협회(울산경남도회)와 함께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와 협회의 이번 현장 합동 일제점검은 도내 건설경기 침체로 주택건설 수요가 감소함에도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무실 규모, 자본금, 기술인력 등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기준사항에 적법한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그 대상으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연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내 425개 업체 중 미제출된 149개 업체가 해당된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결과를 근거로 등록기준이 미달된 사업자에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사업자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 향상 등 건실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사업자의 사무소 주소 및 면적, 임원, 기술인력, 자본금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도 1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므로, 사업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그 기간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자료 :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211-4436

경남도, 2015년 국고예산 3조 7,873억 원으로 사상최대 확보

- ▶ **홍준표** 도지사 두팔 걷고 나서 국비확보 전년 대비 8.6% 증액
- ▶ **항공산업 특화단지, 로봇 비즈니스 벨트** 등 미래 50년 전략 사업 신규반영 성과
- ▶ **정부 재정지출 증가를 5.7% 상회 확보, 국회 심사시 추가확보 총력 경주**

경남도는 지난 9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1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경남도 국고예산은 전년 대비 8.6%(2,987억 원)가 증액된 3조 7,873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3.1%보다 5.5%p 높은 증가율로 국고보조사업 3조 396억 원, 지역발전특회계사업 7,477억 원을 합한 것이다.

여기에 국가시행사업 2조 3,016억 원을 포함하면 총 6조 889억 원으로 2014년 국고확보액 5조 7,776억 원(국고보조 2조 7,794억 원, 광특회계(2015년부터 지특회계) 7,092억 원, 국가시행 2조 2,890억 원) 보다 3,113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경남도의 주요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 ▶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 : 65억 원
- ▶ 마산 로봇랜드 조성 : 77억 원
- ▶ 산학융합지구 조성 : 30억 원
- ▶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 578억 원
- ▶ 고향의 강 조성사업 : 731억 원
- ▶ 거제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구축 : 97억 원
- ▶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 구축 : 12억 원
- ▶ 항노화산업 산학융복합센터 구축 : 31억 원
-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 22억 원
- ▶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 5억 원 등

〈지특회계사업〉

- ▶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 : 50억 원
- ▶ 석동~소사간 도로 개설 : 78억 원
- ▶ 갈사조선산단 내부 간선도로 개설 : 70억 원
- ▶ 대송산단 내부 간선도로 개설 : 50억 원
- ▶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 265억 원
- ▶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 51억 원
- ▶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 : 491억 원
- ▶ 창원 컨벤션센터 증축 : 123억 원
- ▶ 국지도(동읍~봉강 등 15개 노선)건설 : 878억 원 등이며,

또한, 〈국가시행사업〉으로 반영된 주요사업을 보면

- ▶ 88올림픽 고속국도 확장 : 3,890억 원
- ▶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 2,450억 원
- ▶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 2,000억 원
- ▶ 거제~마산(국도 5호선) 건설 : 528억 원
- ▶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 510억 원
- ▶ 마산 자유무역지역 확대 및 표준공장 재건축 : 167억 원
- ▶ 귀곡~행암(국대도 2호선) 건설 : 127억 원
- ▶ 창녕~현풍 고속국도 확장(대합IC설치) : 5억 원
- ▶ 신항 건설 : 1,374억 원
- ▶ 마산항 건설 : 93억 원 등이다.

그동안 홍준표 도지사는 2015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하여 올해 1월부터 5차례의 실국원장 회의를 통해 ‘국고예산 및 신규 국책사업 확보 대책’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예산확보 추진 보고회’ 등을 개최한 것 외에도 간부 회의 때마다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하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중앙부처 인사들과 만나는 자리마다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하며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매달려 왔다.

지난 8월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국장급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기획재정부 청사를 방문하여 예산실 부서 곳곳을 누비는 한편,

8월 25일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과의 당정 협의회를 통해 2015년 국고예산확보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또한, 8월 정부예산편성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에 대비하여 '도와 지역 국회의원 2015 국비확보 T/F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남도는 도 실·국·본부장과 지역·상임 위·예결위 국회의원과 협력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확보방안을 정해 정부안에 담긴 예산은 감액을 저지하고 부족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시킨다는 전략이다.

경남도 정연명 기획조정실장은 "9월 18일 발표한 정부예산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 5.7%보다 상회한 8.6% 증액 확보 되었지만, 주요 현안사업 예산 추가확보를 위하여 도와 지역 국회의원 T/F팀 활동을 강화하고, 국회, 기획재정부, 정부부처, 지역 출향인사 등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간부공무원들 중심으로 국비확보에 전 행정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3일 국회에 제출되는 2015년 정부예산안은 10월~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 자료 : 도 예산담당관실 재정지원담당
(055)211-2373

국토부!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축개선 과제 신속히 추진 나서

▶ 공개공지 제공비율만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농·축산 생산물 판매시설 규제완화 등 연내 시행

올해 11월부터 대지 일부를 공중을 위해 공개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판매시설 불허 지역에서도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 등의 일부 공간에 자체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며, 주방설치가 금지되는 기숙사도 전체 호수의 50%까지는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서 국민에게 신속히 건축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주가 건축대지안에 공개공지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1.2배 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조례에서 완화 규정을 두지 않아 그동안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만이 컸다.

* (예시) 판매시설 건축시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을 15% 완화할 수 있으나, 수도권 권의 경우 법정 의무비율 초과시에만 용적률을 완화

※ (공개공지) 일정 규모·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일반인의 통행로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

*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지역 및 허가권자가 공고한 지역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앞으로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시행령에서 직접 완화 받게하고, 건축조례에서 더 많이 완화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단, 완화되는 용적률 및 높이는 당해 대지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② 부속용도를 지자체에서 소극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속용도를 신속·명확하게 고시한다.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안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계란 등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용도변경 절차도 생략된다.

현재는 과일, 꽃, 계란 등을 판매하는 시설은 규모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미만) 또는 판매시설(1,000㎡ 이상)로 분류되어 입지제한을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 절차도 이행하여야 하나, 부속용도로 인정되면 '판매시설'로 보지 않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입지제한 및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판매시설이 금지된 생산농지지역에서 과수원에 판매매장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 발생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 부속용도를 신속·명확하게 고시하여 고시 기준에 맞으면 부속용도로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종업원 후생복지시설과 관계 법령에서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③ 농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가 확대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도 연장된다.

농어민과 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선별 작업용 시설”은 신고로서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저장용·간이포장용·간이수선작업용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현재 공장이나 창고부지내만 한정하지 않고 공장과 창고와 관련이 있으면 인근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였다.

* (예시) 공장주인 K씨는 주문 생산량이 급증하나 공장 부지가 협소하여 생산품 보관 가설건축물을 인근 부지에 축조하고자 하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생산품 보관에 애를 먹고 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농·어업인과 기업인의 불편을 해소 하였다.

④ 건축을 할 수 없는 자투리땅에 대한 일조기준 적용 제외 등 일조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인접대지의 일조 등에 피해가 없도록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을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다.

* 높이 9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 9m 초과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앞으로 건축하는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더라도 정북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 (예시) P씨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대지에 연립주택 건축을 계획 중에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상업지역이지만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성이 없어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또한, 인접 대지의 최대 너비가 2미터 이하인 필지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 (일반·중심상업지역 제외)

⑤ 앞으로는 기숙사에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 진다.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의 숙소 개념으로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 (예시)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을 받은 L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길 원하나 인근에 마땅한 주거지도 없어 공장 기숙사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최근 기숙사에서 가족 중심의 생활이 요구되고 주변에 식당 등이 많지 않은 입지 특성 등을 고려, 전체 세대수의 50% 미만까지 독립된 취사시설을 허용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된 개선내용 중 도로사선제한 폐지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3

'14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평균 1.1% 상승

▶ 실적공사비 제도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총 1,968항목에 대한 '14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를 지난 8.29일 공고하였다. 이번에 공고한 실적공사비의 평균단가는 '14년 상반기 대비 1.1% 상승하였으며 분야별로는 토목공사 1.0%, 건축·기계설비 공사는 1.3% 상승하였다.

* 실적공사비 : 공종별 계약단가를 토대로 하며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

한편, 같은 기간 생산자 물가지수는 0.4% 상승하였으며, 노임지수는 1.2% 상승하고 토목·건축부문 공사비지수가 1.1% 상승함에 따라 실적공사비는 1.1% 상승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실적공사비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과 부합되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04년부터 매년 2회(2, 8월) 갱신·공고하고 있으며, 금회에는 기존의 1,961항목 외에 건축 공사의 시스템동바리 및 고름모르타르 등 7항목을 신규로 지정 하여 실적공사비 전환항목은 총 1,968항목으로 확정되었다.

* 실적공사비 전환 추이(항목수)
(‘04) 285 → (‘08) 1,392 → (‘10) 1,604 → (‘12) 1,914 → (‘14상) 1,961 → (‘14하) 1,968

이번에 공고된 '14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금년 6월부터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을 검토·논의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70

9.1대책 후속조치(3)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 9.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새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기준 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를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9.1 후속조치로서 재정비 규제 합리화방안 추진

①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

현행법은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20 ~ 40년까지 차이*가 있고

* (연한 상한)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 등은 40년, 대구·경북·울산 등은 30년, 전북·강원·제주는 20년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 '91년부터 지하주차장 설치(전체 주차면적의 30%)가 의무화되어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문제 심각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 설비,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특히,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기준 개선과 함께 재건축 연한도 단축하여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87~'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되는데, 세대수로는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 14.9%, 강남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는 등 서울 지역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 연도별 준공물량 및 제도개선에 따른 변화 (서울), 단위: 천세대 》

준공 연도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전국 물량	136천	122	186	194	233	346	484	475	500	496	450	478
서울 물량	39천	37	86	36	29	58	80	69	63	64	62	74
서울시	2016	2019	2022	2025	2028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개선안(차이)	2016(0년)	2017(2년)	2018(4년)	2019(6년)	2020(8년)	2021(10년)	2022(10년)	2023(10년)	2024(10년)	2025(10년)	2026(10년)	2027(10년)

【 서울시 '87~'91년 준공 공동주택 중 연한단축 혜택 세대수, 단위: 만세대 】

서울(전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 외 지역
24.8(100%)	3.7(14.9%)	21.1(85.1%)

②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현재 모든 재건축단지가 구조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 (평가 비중)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가장 높음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저고,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 해소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택의 구조안전 제고와 주민불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하여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최하위의 E등급 판정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 주거환경 평가시에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도 반영할 계획

* (예시) 주거환경 비중: 15% → 40%

안전진단기준에 관한 세부 제도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14년 말까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③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연면적 규제는 시장과열기에 중대형 주택 선호에 따라 초소형 주택을 구색만 맞춰 건설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 최근 재건축('09~'14)에서 소형 주택(60㎡ 이하) 공급비율이 전체 세대수 기준으로 서울은 23~38%, 경기도는 28~89%로 조례상 기준인 20%를 크게 넘고 있음

④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5%p 완화

주택 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오히려 **상향***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개발시 임대주택 비율 17%에서 20%로 상향('1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 (세대수) 서울 20%, 인천·경기 17%, 광주 8.5%, 부산·대구·대전 5%

모든 지자체가 연면적 기준은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으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p 완화한다.

다만, 지자체는 정비계획 수립시 기존 재개발사업에서 전체 세대수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 세대수 비율이 지자체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p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다.

기존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 세대수
* $\frac{\text{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text{세대수}}$

»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또한, 지역별 구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화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의 하한은 폐지(고시)한다.

《 현 행 》

구 분		세대수 기준	연면적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7 ~ 20%	12 ~ 15%
	과밀억제권역 외	8.5 ~ 17%	6 ~ 12%
수도권 외		5 ~ 17%	3 ~ 12%

《 개 선 》

구 분	세대수 기준	연면적 기준
수도권	15% 이하	“삭 제”
수도권 외	12% 이하	

* (개선) 다만, 세입자용 임대주택 부족시에는 지자체장이 5%p까지 상향가능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

소규모 중층주택 건설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구분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제한에 관하여 제1·3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완화하되,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역,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에 층수기준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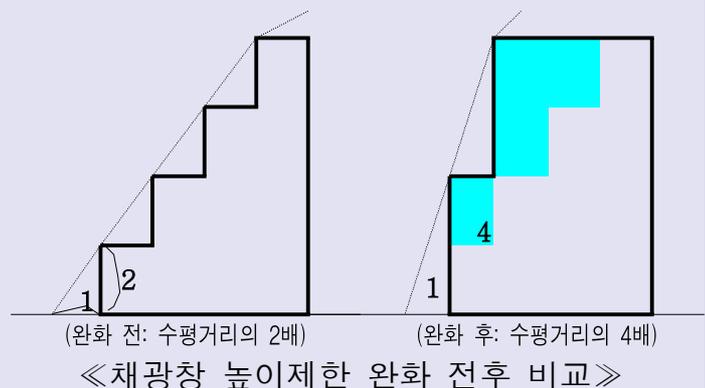
<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 비교 >

구 분	현행	개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국토계획법에 따름 - 4층으로 제한	국토계획법에 따름 - 4층으로 제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7층 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 15층 이하 (도시계획조례)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 동	국토계획법에 따름 - 층수 제한 없음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 1/2 범위에서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을 1/2 만큼 완화*함으로써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아래 하늘 색 표시부분),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를 4배 이하로 완화



지붕에 태양광 설치면적 추가 확보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14.7.17)

다만, 인근 건물의 채광을 위해 7층 건물에 한정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14년 말까지 공포 될 경우,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기간(4개월)을 고려하여 이르면 '15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재정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내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9.3.)와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6.26.)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후속 조치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발표사항>

① 야영장 및 체육시설 설치 규제 완화

그 간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한다.

* (시·군·구 당 평균) 야영장은 3개, 실외체육시설은 10개소 이내로 제한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확대된다.

* (현행)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600㎡ 이하 → (개선) 테니스장, 농구, 배구 등 모든 생활체육시설/ 800㎡ 이하

② 공동구판장의 용도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생필품 판매, 방앗간, 금융창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 발표내용>

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음식점 등 30여종)하였으나, 앞으로는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②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

현재는 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필요한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10종)에 대하여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 종류,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

③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 수소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자동차의 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 부지 규모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규모와 동일하게 3,300㎡로 제한

④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더라도 구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여야만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구역내 주택의 소유 및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⑤ 노외(路外)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노외주차장 설치 가능하지만, 관리용 건축물은 허용되지 않아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 이하) 설치를 허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시행규칙: 11월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

재건축사업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 폐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16)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 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

- 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는데,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9월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후인 '15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였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지난 9월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 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삭제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맞춤형 행복주택 건설기준” 본격 시행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행복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및 공원·녹지 설치기준 마련

이달부터,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을 가구당 0.35~0.7대 확보하도록 설치기준이 구체화되고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 기준을 정하고,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 시장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지특성을 고려한 행복주택 건설기준 마련

(주차장 및 공원·녹지)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부지중 도심지·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및 공원·녹지를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50/100 범위내에서 규모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차장 1세대당: 30㎡ 이상: 0.7대, 30㎡ 미만: 0.5대, 대학생용 20㎡ 미만: 0.35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 : 60㎡ 이하 : 0.7대)

* 공원·녹지 :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기준의 1/2

다만, 공공시설부지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인구계획) 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수요산출의 기초가 되는 세대당 인구계획기준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특성을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 대학생·사회초년생(1~2인/호), 신혼부부(2.65인/호), 노인(1.75인/호), 취약계층(1.7인/호)

②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 조정 등

그간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주택시장의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미분양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85㎡ 초과 용지와 같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시장여건을 반영하되, 과도한 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양택지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가 넘지 않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총괄과
(044)201-4505



교통사고 없는 꿈의 고속도로 “한국이 선도”

▶ 경부선 서울~수원 시연...졸음·전방주시태만 등 부주의 예방

졸음, 전방주시태만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첨단미래고속도로(스마트하이웨이) 기술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첨단미래고속도로 시연 행사를 16~18일 서울요금소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하루 평균 20여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구간에서 차량용 고속무선통신 기지국, 도로 레이더, 파노라마 폐쇄회로TV(CCTV) 등을 설치하고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에 단말기 100대를 설치하여 현장 실증시험을 하고 있다.

* WAVE 기지국(9개), 스마트단말기(100대), 레이더(4대), 파노라마 영상시스템(2대)

시연 행사 참가자들은 실제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수원 간 약 20km 구간을 시속 90~100km로 고속 주행하면서 앞서 주행하는 차량과 제동 상태, 급정거, 차간거리 등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 위험 상황에 대한 경보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상황을 체험하였다.

이 기술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술로,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고속 주행하는 차량끼리 0.1초마다 운행상황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 최근 5년 간 교통사고통계 : 졸음(458건, 31.1%), 전방주시태만(425건, 28.9%), 안전거리 미확보(38건, 2.6%)

고속 운행 상태에서 정보 교환이 가능한 무선통신(WAVE*) 기술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되어 성공적으로 시험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무선통신(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
·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주변 차량의 위치, 상태와 도로에 설치된 기지국으로부터 주변 사고, 낙하물 등 위험상황과 교통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기술

또한, 이번 시연에서는 낙하물, 보행자, 야생동물 등의 출현에 따른 돌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량에 즉시 알려 주는 기술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도로 레이더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레이더 기술을 도로에 적용한 것으로 1km 범위 내에 위치한 30cm 크기의 물체를 수초 내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도로 레이더는 지난 8월 경부선 죽전휴게소에서 발생한 연쇄추돌사고를 즉시 감지한 바 있으며, 서해대교에서는 가시거리 100m미만의 짙은 안개에서도 급정거한 차량을 확인하는 등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사고 및 고장 차량이 있다는 것을 후속 차량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일반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 이상 높은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최근 5개년 교통사고 치사율 : 2차 사고(62.3%), 일반 사고(11.2%)

시험장비는 연말까지로 예정된 시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해외 홍보와 새로운 ITS 기술을 검증·개선하는 시험대(test bed)로 이용할 예정이다.

* 상시 기술시연: 2012년(3회), 2013년(7회), 2014년(9월 현재 8회)
· 내국인 500명, 외국인 60명(미 교통부, 동남아 10여개국, 중남미 등)

기존 시험노선은 내년 11월 서울 세계도로대회에서 60여 개 국 약 35,0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으로 우리나라가 지능형 첨단도로체계(ITS) 기술의 선두 주자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도로대회 기술시연행사(2015.11, 서울)
· (규모) 120여 개국 약 35,000여 명 참가 (외국인 참가 약 1만 명 추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기술시연이 실제 공용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기술의 상용화에 한층 가까워졌다.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생활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며, 스마트카 기술개발과 결합되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7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우수 사례』 발굴 시상

▶ 제7회 대한민국 건설품질경영대상 대회공고 (9.23일), 사례접수(10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주최하고 한국 건설품질협회가 주관하는 「제7회 대한민국 건설품질경영대상」 경진 대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 12월 19일 개최된다.

올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와 충남 아산의 오피스텔 침하 등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건설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건설품질관리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나,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단기적인 비용절감에 치중하다보니 품질관리에 소홀하기 쉽고 품질관리자에 대한 대우도 열악한 형편이다.

「대한민국건설품질경영대상」은 건설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품질 관련 신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종사자들의 지위 향상 및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일반현장은 WASCON LEVEL III* 이상, 건축/공동주택 현장은 AQUA** 7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학계, 협회, 공무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World-wide Assessment System of Construction Quality Maturity Stage(건설품질시스템 성숙도 평가 메뉴얼에 의한 평가점수 80점 이상)

** Advanced Quality Assessment System(건설품질 평가시스템)

시공 적용성, 안정성 등 창의적인 공법 및 기능개선 등을 심사하여 토목, 건축, 기타분야별로 품질경영대상, 품질혁신상, 고객만족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시상은 품질경영대상(3개, 장관상) 상금 각200만원, 품질혁신상(3개, 협회장상) 상금 각100만원, 고객만족상(3개, 신문사사장) 각1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금번 경진대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품질경영사례는 각종자료를 취합, 사례집으로 제작 배포, 전파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향상에 유용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입법예고일 : 2014. 9. 24.(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162호)
- 예고기간 : 2014. 9. 24. ~ 2014. 10. 14.

□ 개정이유

'13년 6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요건을 정비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신설,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 명확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실적공사비 제도 명칭 변경 및 산정기준 개선(안 제9조제3호)

현행 실적공사비제도는 시장가격 반영에 한계가 있어 “시장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정토록 개선하고 그 명칭도 개선되는 내용에 맞추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함.

2. 과징금 부과요건 정비(안 제76조의2)

'13년 6월부터 부정당업자의 행위가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이 천재지변 또는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에 기인한 경우 등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단순 경과실 행위나 재발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신설(안 제106조의2 신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탈락자 중 우수설계 또는 우수대안제시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은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우수기술제안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를 마련함.

4.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확대(안 제110조)

국가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13년 6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이 협소하여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과 관련한 사항도 동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할 수 있도록 심사대상을 확대함.

□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전화 : 044-215-5214
- 팩스 : 044-215-8113
-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 기획재정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입법예고일 : 2014. 9. 19.(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62호)
- 예고기간 : 2014. 9. 19. ~ 2014. 11. 1.
- 개정이유

<시행령>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579호, 2014. 5.14. 공포, 2014. 5.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턴키비리 방지를 통한 공정·투명한 턴키심의제도 정립을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턴키심의 위원)의 임기를 최소화하여 심의위원들의 로비노출을 방지하며 건설시설물의 안전성 제고 등 성능향상을 위해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검토(설계VE)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설계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환경분야 건설기술자의 직무 전문분야를 세분화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시행규칙>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14.5.13)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행령>

1. 건설기준의 관리 규정 신설(안 제65조의2)

-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업무에 건설기준에 대한 검토·자문 업무를 추가
- 기준센터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
- 기준센터는 정보화 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기준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기준센터는 중앙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건설기준의 구성체계 및 상충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기준센터는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관리규정 신설(안 제65조의3)

- 기준센터는 출연금 출연요구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연금은 기준센터의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3.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안 시행령 별표 2)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안 제75조제1항)

-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뿐만 아니라 시공 중에도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5.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범위 확대(안 제57조)

- 설계의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실시설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의무화

6.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5조, 안 제116조)
 - 건설공사기준,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건설기준으로 용어 변경
-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조정(안 시행령 별표 1)
 - 자연 토양환경분야를 “자연환경”과 “토양환경”으로 세분화

<시행규칙>

1.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신설(안 제37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준 구성체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 건설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준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기준센터에 통보하도록 함

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37조의2, 안 제37조의3)

- 건설공사기준, 설계 및 시공기준을 건설기준으로 변경

3. 기준센터의 운영 등 신설(안 제38조)

- 기준센터의 운영계획 및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기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기준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 의견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로 2014년 11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TEL: 044-201-3564, 3565, FAX: 044-201-5552)

■ 자료 : 법제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입법예고일 : 2014. 9. 18.(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38호)

□ 예고기간 : 2014. 9. 18. ~ 2014. 10. 28.

□ 개정이유

○ 최근 도심지역 지반에 동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 누수 또는 이에 따른 지반침하)을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포함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자격기준 및 장비보유기준의 일부 과도한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사항 항목 신설(영 제12조제1항)

○ 중대한 결함 항목에 지반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인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 누수 또는 이에 따른 지반침하’를 포함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와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현재 시특법에서는 안전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자가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2.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조정(영 별표3)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중급기술자) 특정분야에 대한 ‘기사’ 자격으로 제한을 두던 항목을 삭제

* 현행 등록기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3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면서, 특정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자가 60% 이상 포함하도록 한번 더 ‘기사’ 자격으로 한정하고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경력, 학력, 자격을 모두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중급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자격(기사)으로 제한되지 않고 있음

3. 안전진단전문기관 필수 보유 장비 축소(규칙 별표1)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비 중 현재 유사 기능 장비가 시중에 많이 보급되어 안전점검 및 진단 수행 시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항목인 ‘비디오카메라’를 삭제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2-201-3587, 팩스 : 044-201-5553

■ 자료 : 법제처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고무보 고무본체와 보호커버 체결 시공기술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동부엔지니어링(주)
	(주)대도엔텍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38호
- 기술분류 : 토목/수자원/보
- 내용요약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 공업 및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를 확보하고, 홍수 발생시 상류지역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에 고무로 된 가동보(수위를 조절하는 보)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고무보는 장기간 사용하면 보의 폭방향으로 길이가 늘어나 조절하고자 하는 상류수위보다 높아져 원하는 위치에서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무보에 폭방향과 길이방향으로 보강포를 교차 배치하여 고무보의 신장을 방지하고, 고무보 전면에 보호커버를 설치하여 고무보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개량된 고무보는 기존 고무보보다 폭방향 신장율을 70% 감소시켰으며, 추가의 고정장비 없이 고무보를 설치하는 고정금구류에 보호커버를 동시에 체결하므로 공사비 20%, 공사기간 10%를 단축할 수 있다.

이 신기술은 기존 고무보의 단점을 개선하고 시공도 간편하여 하천 고무보로 많이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개량된 고무보와 보호커버



<그림 2> 고무보 시공완료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무보 폭방향(수심방향)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고무보의 고무본체와 보호커버 통합체결 고정구조를 갖는 개량형 고무보 시공기술

격자형 철망 고정틀 내부에 삽입된 식생포대에 토석을 채워 시공하는 비탈면의 옹벽녹화 및 하천제방의 호안녹화 조성기술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솔라원환경기술(주)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39호
- 기술분류 : 토목>토질및기초>옹벽 (보강포옹벽 포함)
토목>수자원>호안조성
- 내용요약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사면 붕괴, 산사태, 하천 제방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존의 콘크리트 혹은 돌망태 옹벽은 생태계를 훼손하고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격자형의 철망 고정틀에 삽입된 식생포대에 현장의 토석을 채우고, 초류종자를 부착시켜 식생이 활착되도록 하는 옹벽녹화 및 호안녹화 조성기술을 개발하였다.

식생포대는 장섬유부직포로 구성되어 폭우나 홍수시 구조변형을 방지하며, 그 안에는 고강도그물망, 황마시줄 넷트 등이 설치되어 채움흙이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현장의 토석을 채움재로 사용하므로 고갈되어가는 자갈, 돌 등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신기술은 구조적으로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식생녹화로 생태복원이 가능하여 녹색 기술 인증을 획득하였다.

향후 도로사면, 생태하천, 휴양림시설 등 광범위한 장소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식생포대 옹벽녹화 시공완료



<그림 4>옹벽녹화 식생활착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철망으로 제작된 격자형 고정틀 내부에 삽입된 포대에 현장의 토석을 채워 시공되며, 앞면의 식생포대에 초류종자를 부착시켜 식생이 활착되도록 하여 흩갈기 및 흩쌓기 비탈면의 낮은 높이의 옹벽녹화와 하천제방의 호안녹화를 조성하는 기술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점착 방수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방수재를 이용한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 리뉴시스템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40호
- 기술분류 : 건축>방수>구체방수 및 지하 외방수
- 내용요약

기존의 방수재료는 용융 및 가열로 인한 CO2 발생, 유해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대기 오염 문제, 산업폐기물 발생 등 환경적 문제와 구조물의 하중 및 거동, 부등침하 등으로 쉽게 균열이 발생하여 누수가 확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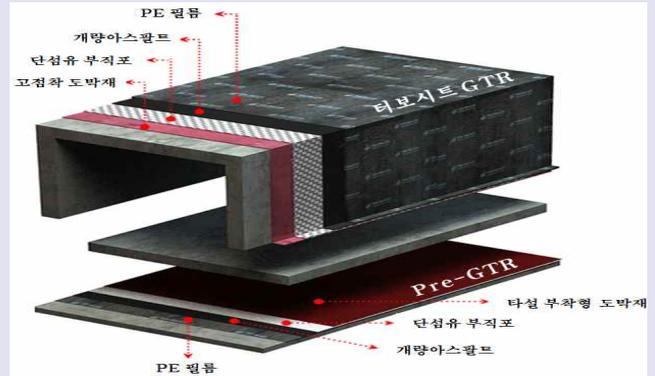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연 라텍스 재활용 고무를 이용한 고점착 방수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물의 바닥, 벽체부위에 완전히 접착시킴으로써 누수발생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방수시트를 구조물에 접착하기 위한 별도의 열기구 등의 사용 없이 재료적인 자가 접착력만으로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방수공사에서 가장 취약 부분인 방수시트간의 접합을 위하여 스프링 탄성을 이용한 롤러 장비를 개발하여 일정하게 압착이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 기술에 비해 공사비는 바닥부분은 약 20~30%, 벽체부분은 약 7~20%정도 절감되고 환경 친화적 소재를 이용하여 작업자의 안전 및 시공환경을 개선하였다.

이 신기술은 누수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건축 및 토목 지하 구조물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 온통 GTR 외방수공법 구성 요소



<그림 6> 방수재 시공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무를 이용하여 제조된 고점착 특성의 '터보시트 GTR'과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Pre-GTR'을 이용한 콘크리트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

레미콘공장에서 제조되는 라텍스 개질콘크리트를 이용한 신설교량용 교면포장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태영건설
	(주)제이엔티아이엔씨
	최상률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41호
- 기술분류 : 토목>도로>교면포장
- 내용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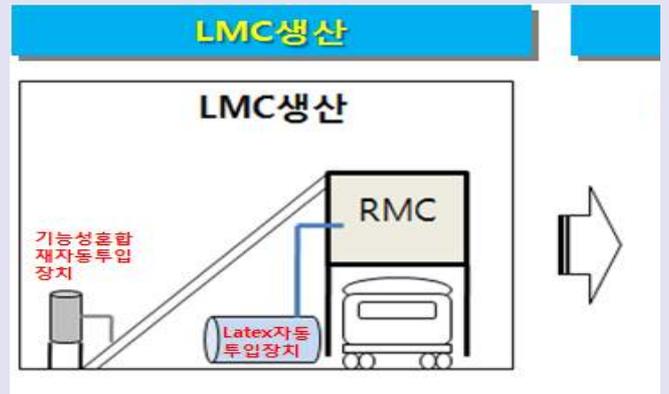
교면포장에 사용하는 라텍스 콘크리트의 경우 라텍스 입자가 시멘트와 접촉하는 순간 응집이 발생하여 작업이 가능한 시간이 20여 분밖에 불가하므로 레미콘 공장 등의 제조설비를 이용할 수 없어 시공현장에서 이동식 모바일 믹서를 사용하여 제조해야만 시공이 가능한 기술적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종의 분자 길이가 다른 계면활성제와 폴리머계 유동화제를 복합적으로 라텍스 입자에 흡착시켜 콘크리트의 시공에 요구되는 가사시간을 연장한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복합계면활성제를 사용함으로써 콘크리트 라텍스 입자의 보호가 장시간 가능하여 가사시간을 90분이상 확보하였으며, 레미콘 공장에서 제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공사비 15%, 유지관리비 15%의 절감이 가능하고 레미콘이라는 범용장비를 이용하여 동시다발적인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이 신기술은 레미콘 생산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라텍스콘크리트(LMC)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공함으로 신설 교면포장 현장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7> 라텍스개질콘크리트 시공시스템의 개요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복합계면활성제를 첨가한 라텍스 에멀전을 혼합하여 가사시간이 90분 이상인 라텍스개질 콘크리트를 레미콘공장에서 제조하여 현장운반 및 시공되는 신설교량용 교면포장공법

공장 생산된 박막형 점착 복합 방수시트와 콘크리트간 재료적 일체성을 가지는 건식화 복합방수 시공기술(Dry Waterproof System)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아하방수텍(주)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42호
- 기술분류 : 건축>방수>구체 방수 및 지하 외방수
- 내용요약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기존의 방수 기술은 방수재료의 혼합을 위해 휘발성유기 화합물이 사용되어 환경오염 및 인체에 유해 하며 콘크리트 구조체의 부동침하, 온도의 수축·팽창 등으로 방수층이 파손되어 지하수 및 유해수가 침투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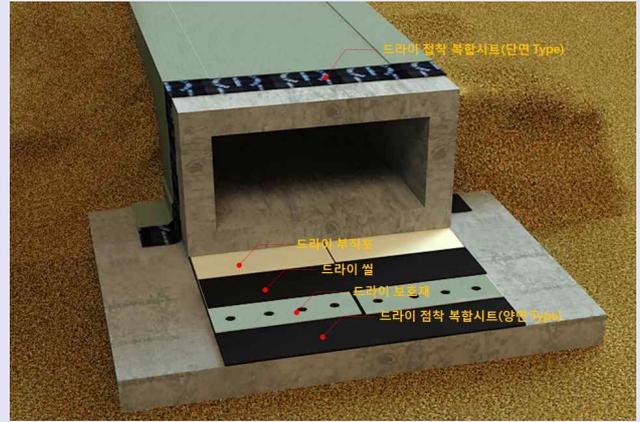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수시트 제조과정부터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 휘발성유기 화합물의 사용을 완전 배제하고, 박막형 타입의 자체 점착 특성을 지닌 복합 방수시트로 건식화 방수시공이 가능한 신기술을 개발 하였다.

개량 아스팔트 시트와 점착 유연형 싨재를 복합화 한 드라이 점착 복합시트는 친수성을 가지고 있어 특히 누수의 위험이 큰 콘크리트 구조물 하단부와 재료적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 방수층의 파손과 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방수시트 제조 및 시공 단계에서의 환경 유해물질 최소화로 녹색기술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용융 및 가열없이 시트자체의 점착력으로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17~30%가 절감되었다.

이 신기술은 친환경적이고 시공도 간편하여 방수기술로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8> 건식화 복합방수재 구성도



<그림 9> 드라이 점착 복합시트 시공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장 생산된 박막형 점착 복합시트, 구멍 뚫린 보호재, 점착 유연형 싨재(드라이 싨), 부직포를 이용하여 시공과정에서 현장 배합, 프라이머, 기계식 고정 등을 배제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하부와 방수층이 재료적 일체성을 가지는 공동구 등 지하구조물의 외방수에 적용되는 건식화 복합방수 시공기술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MRCP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삼우아이엠씨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43호
- 기술분류 : 토목>도로>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 내용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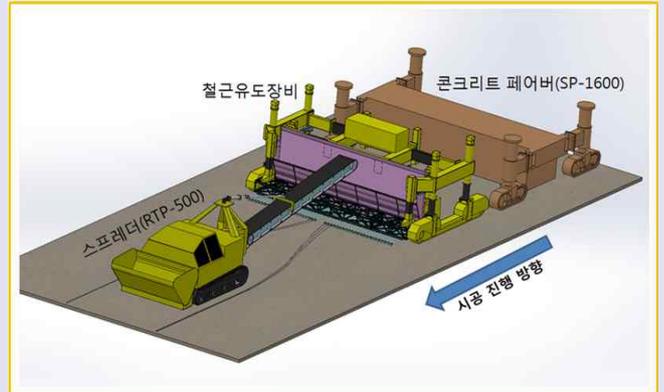
염화칼슘 등 제설재 사용량 증가, 혹서기 기간 증가, 집중 폭우로 인하여 콘크리트 도로에서 포장이 파손되는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최근에 철근콘크리트 도로 포장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 공법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콘크리트를 도로 측면에서 공급해야 하므로 상·하행 분리가 되어 있는 도로나 터널구간 등에서 시공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근을 설계된 위치에 자동으로 배근하는 철근유도장비를 개발하여, 철근 배근과 동시에 콘크리트 포장이 가능한 도로포장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콘크리트 포설 5~10일전 인력으로 철근을 배근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콘크리트 포설 당일 철근유도장비로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포설이 동시에 가능하여 철근배근 시간이 70% 단축 되었으며 도로측면에서 콘크리트를 공급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산지가 70%이상으로 협소구간, 터널 분리구간 등 공간적 제약이 많은 국내 지형여건에서 이 신기술은 최적화된 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 기술이며, 해외에도 기술 및 국내장비의 보급이 기대된다.



<그림 10> 시공 개념도



<그림 11> 철근 유도 장비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 중 커플러 방식으로 연결시킨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공간내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기술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https://www.kaia.re.kr/>) 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현황

2014년 제10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4건
- 심의일자 : 2014. 9. 23.(화)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심의결과
2014-10-01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거창군 (산림녹지과)	조건부
2014-10-02	함안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조건부
2014-10-03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사천시 (도시과)	조건부
2014-10-04	장유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SOQ)	김해시 (건축과)	조건부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6

계약심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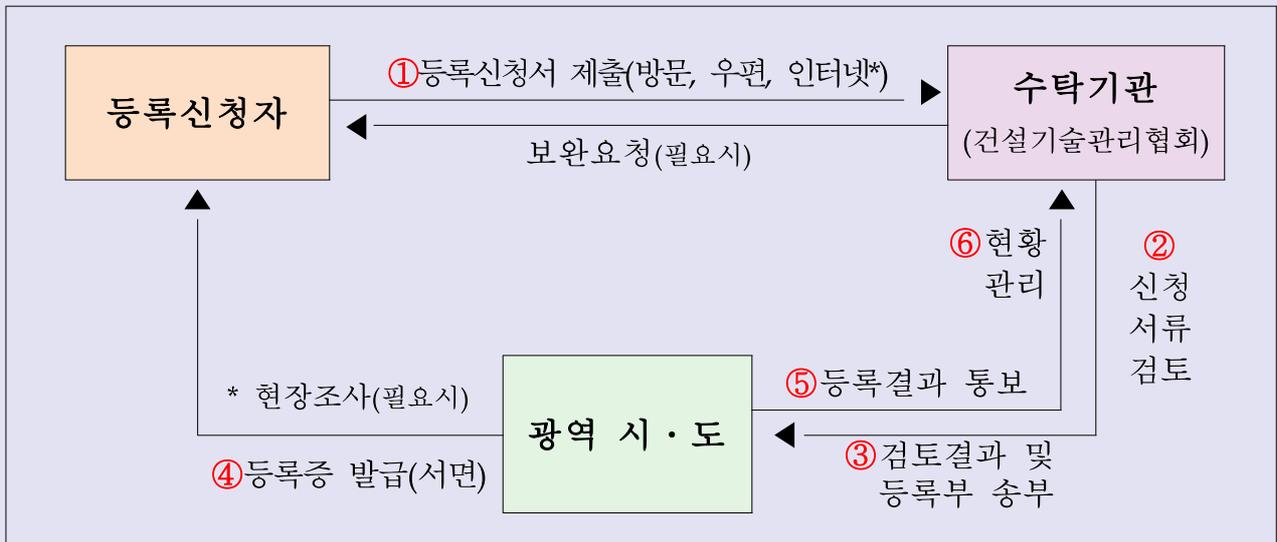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4년 9월	계		24	24,405	23,720	685	2.81%
	공사	토목	4	9,249	8,926	323	3.49%
		건축	5	9,313	9,083	230	2.46%
		기타	5	2,899	2,887	12	0.41%
	용역		7	1,900	1,790	110	5.80%
	물품		3	1,044	1,034	10	1.02%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8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안내

- 2014. 5. 23.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이와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민원의 접수·확인 및 관리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 현행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1년 이내(2015. 5. 22.까지) 변경 등록하여야 함.



- <① 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 <② 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관리협회)
- <③ 단계> :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관리협회→해당 시·도)
- <④ 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 <⑤ 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관리협회)
- <⑥ 단계> :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관리협회)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babyhye@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